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배구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배구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규약」 제50조(사무국 운영 등), 제52조(정관변경), 제53조(규정 제·개정 등)에 의거, 협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참고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규정 제·개정을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가. 협회 「규약」 관리 미흡

협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제1항에 따라, 본회 각종 규정을 참고하여 협회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2016년 7월에 제정한 이후 2023년도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기타규정 관리 미흡

협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이외의 기타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체 규정 없이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스포츠평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이사회와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각종위원회 규정」을 미제정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배구협회장은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최신화하고 기타규정은 운영을 검토하여 필요한 규정은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배구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조직 운영,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협회 「규약」,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행정의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은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2조(적용)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정한다고 되어있다.

협회는 모든 예산 집행 시 본회 「회계규정」 제42조(지출원인행위)¹⁾,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²⁾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5항³⁾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 1) 제4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43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소관부서에 설치된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 3)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달성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지출품의)를 통해 집행의사를 결정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⁴⁾, 제32조(세금계산서 등)⁵⁾,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⁶⁾에 의거, 협회는 업체로부터 각종 계약을 통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계좌이체 지출 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자료를 계좌이체 지출에 따른 회계증빙자료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⁷⁾ 및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⁸⁾에 의거, 견적서 등으로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하여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
- 4)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5)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6)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 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7)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선정절차 등)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구입하려는 목적물의 가격을 파악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각종 보조금 집행 등 예산 회계 업무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이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가. 지출품의 미이행

협회는 모든 예산 집행 시 집행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여야 하나, 각종 사업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2022년도 ***** 사업에서만 지출품의와 지출결의를 실시하고 회계·관리하였으며 자체비는 내부결의라는 이름으로 지출품의를 실시하고 있는 등 체계적으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회계 증빙서류 미비

협회는 본회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한 대회에서 계좌이체로 집행함에 있어 업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료를 지출 회계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하나, 예산 집행 시 [표1]와 같이 해당 증빙서류 없이 회계업무를 진행하였다.

9)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표1] 회계 증빙서류 미비 목록

연번	사업명	업체명	품목	지출일자	금액(원)	미비사항
1	2022 ***** **	피*****	트로피	2022.**.**	*,***,000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2	2022 ***** **	피*****	상캉케이스	2022.**.**	***,000	
3	2022 ***** **	대*****	현수막	2022.**.**	***,000	

또한 각종 보조금을 집행할때에는 견적, 비교견적 등 회계증빙자료를 근거로 집행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치사항] 경기배구협회장은

협회의 각종 보조금 집행 시 모든 예산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품의에 따라 회계 지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해 집행하는 등 집행절차와 회계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각종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배구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배구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등에 따라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그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단체인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였고 이사회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1개의 위원회만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협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배구협회장은

본회「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각종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배구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배구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회계 업무수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¹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에게 해당하는

10)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체육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무장,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배구협회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협회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